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2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4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최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용배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52,308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



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3,552,3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의 확인 보
고), 수사보고(D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
보고(고소인의 게임저작권 사용계약 확인), 수사보고(D의 저작권에 대한 확인 및 사
이트 IP 확인)

1. D 라이선스 계약서, 게임개발 및 서비스 라이선스 관련계약 해지 확인 요청 회신,
사설서버 캡처자료(E), 계좌이체캡처사진, E 홍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단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고소권자의 고소 없
이 공소제기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소추요건은 충족
되었다. 따라서 범죄사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년 일자불상의 기간까지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며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으나 그 후로는 무료로 게임을 운영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은 2017년까지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판매 외에 중고물품 판매를 하면서도 하나은행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게임아이템 판매로 얻은 돈은 공소장에 기재된 203,552,308원보다 적다.

2. 판단

2017년 불상의 일자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수익 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 6.까지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캐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은 208,462,308원인데 그 중 피고인이 중고물품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의 합계액 4,91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돈은 203,552,308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27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사설 서버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저작권자가 게임 운영을 종료한 후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_____